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수욕장 내 장난감용 꽃불놀이 제한적 허용〉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501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수욕장 내 장난감용 꽃불놀이 제한적 허용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4일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상점에서 불만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을 피해 단발성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여 해수욕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해수욕장 인근 상점 등에서 판매되는 폭죽 등 장난감용 꽃불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사전 판매 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상점 등은 해수욕장법이 적용되는 구역이 아닌 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 되었으며, 해수욕장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실시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중 단속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안 제2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해수욕장 내 장난감용 꽃불놀이 제한적 허용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8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백사장</u> 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u>조례에 따라 정하는 구역과 시간 외에 백사장</u> ----- ----- ----- ----- -----.
9. ~ 13.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는 해수욕장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열거 규정¹⁾하고 있는데, 제8호에서는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장난감용 꽃불놀이가 전면금지되어 있음에도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백사장에서의 장난감용 꽃불놀이가 불법이라 인지하지 못하거나 단속을 피해 단발성으로 하고 있으며,²⁾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당 지역의 여건이나 관리 상황에 따라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허용할 수 있는 구역 및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시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위반한 경우 집중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 집행의 실효성이 증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3. (생략)

2) 최근 3년간 과태료(5만원) 부과실적 : ('19) 52건, ('20) 14건, ('21) 78건 / 일부 관리청(해운대, 송정, 대천, 속초 등) 해수욕장 외에는 단속 실적 미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³⁾

문 의 처
02)6788-5418

3) 참고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 해양수산 규제개선 과제(해수욕장 백사장 내 불꽃놀이 금지 완화)와 동일한 취지임.